

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	2008. 9. 1(월) 15:00		
배포일시	2008. 9. 1(월) 12:00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
담당과장	최영록(2150-4110)	담당자	배정훈 사무관(2150-4111)

제목: '08년 세제개편안 고위당정협의 결과

'08.9.1(월) 07:30 개최된 '08년 세제개편안("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")에 대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논의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수정하기로 합의한 사항

① 대법인의 법인세 높은 세율 인하(25→22%) 시기 1년 연기

○ (당초안) 낮은세율 : (현행) 13% → ('08귀속) 11% → ('10귀속) 10%
높은세율 : (현행) 25% → ('08귀속) 22% → ('10귀속) 20%

○ (수정안) 낮은세율 : 당초안과 같음
높은세율 : (현행) 25% → ('09귀속) 22% → ('10귀속) 20%

* 이유 : 해당 재원(2.8조원)으로 저소득·서민층의 민생안정,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

② 근로장려금(EITC) 지원 확대

○ 지급금액 : 최대 80만원 → 최대 120만원

○ 신청자격 : 무주택자 → 소규모 1주택자 허용

※ 현행 자격 요건 : 18세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, 가구(부부)의 연간 총소득 1,700만원이하, 토지·건물 등 재산합계액 1억원미만

③ 중·저소득층 지원제도 일몰연장(2년)

-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(6/106) 일몰연장('08.12→'10.12)
- 개인이 벤처기업·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(투자금액의 10%) 일몰연장('08.12→'10.12)

④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문제

- 법인세 인하 시행 1년 연기에 따른 재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지원키로 함

기획재정부 대변인